

claim 1.

A method of using an improved breast form system including a pair of backless and strapless breast form which including an amount of silicon gel defined by a thermoplastic film material; an interior surface facing towards a user's breast; an outer side facing towards a user's armpit; an inner side facing opposite the outer side wherein the entire interior surface comprises a pressure sensitive adhesive layer disposed thereon for adjoining the bra cup to the user's breast; and a connector adapted to engage the pair of breast form, comprising the step of:

positioning a pair of separated breast form against a user's breasts;

adjoining a pressure sensitive adhesive layer disposed along on an interior surface of each of the breast form to the user's breasts; and

enhancing the user's breast cleavage by adjoining the breast form together by engaging a connector adapted to attach to inner side portions of the breast form.

claim 2.

The method of claim 1 further comprising the step of pushing up the user's breasts by pulling the user's breasts together and upwards when the connector adjoins the breast form.

The Industry Property Tribunal

7th Division

Communication of certified copy of ruling on trial

Petitioner Name: Bragel International Incorporated

Address: 3383 Pomona Blvd., Pomona, CA 91768, USA

Agent Name: Choi, Hyo Seon

Address: 9th Fl., Hosan Bldg. 823-23 Yeoksam-dong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Trial No.: 2006 원 2518

Representation of case: Appeal against the decision of rejection of Korean
patent application No.0028026 of 2005

Herewith, we transmit of certified copy of ruling on trial in relation to the
above trial case

Encl.: A certified copy of ruling on tri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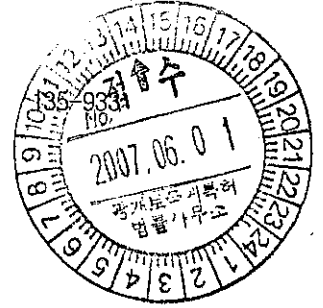
2007. 5. 28.

Presiding Trial Examiner Jung Soon Sung

(Selected translation)

발송번호: 7-7-2007-003558565
발송일자: 2007.05.28

수신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23 호산빌딩9층(공개토국제특허
법률사무소)
최효선



특허심판원 제 7 부 심결 등본 송달서

청 구 인 성 명 브라젤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주 소 미국 캘리포니아 91768 포모나 포모나 볼러바드 3383

대 리 인 성 명 최효선
주 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23
호산빌딩9층(공개토국제특허법률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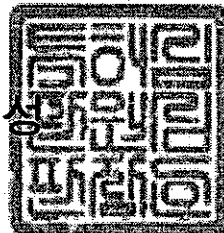
심 판 번 호 2006원2518
사 건 의 표 시 2005년 특허출원 제0028026호 거절결정불복심판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심결문등본을 송달합니다.

첨 부 심결문 등본1통. 끝.

2007.05.28

심판장 정순성



1. 이권 심결에 대하여 패소한 당사자는 심결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에는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와 달리 우편에 의한 발신주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제기 기간 내에 소장이 법원에 도달되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심판행정팀 담당자 김영훈 ☎ 042)481-58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또는 절차에 대하여는 특허청 콜센터 ☎ 1544-808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허심판원 홈페이지(<http://www.kipo.go.kr/ipt>)를 방문하시면 심판진행상황 및 특허심판절차에 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특 허 심 판 원
제 7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06원2518

사 건 의 표 시 2005년 특허출원 제28026호 「개량된 가슴형태 시스템의
이용방법」의 거절결정불복

청 구 인 브라젤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미국 캘리포니아 91768 포모나 포모나 불러바드 3383
대리인 변리사 최효선, 강민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3-23 호산빌딩9층
(광개토국제특허법률사무소)

원 결 정 2006. 2. 23.자 거절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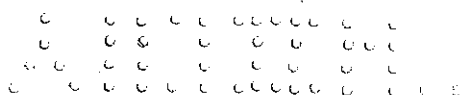
주 문

1. 2006. 4. 21. 보정에 대한 2006. 5. 25. 보정각하결정을 취소한다.
2.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을 특허청 심사본부에 환송한다.

청구의 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이유 및 원결정을 살펴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결정의 경위

- ① 특허분할출원서(2005. 4. 4.)
- ② 의견제출통지서(2005. 7. 4.)
- ③ 의견서(2005. 9. 5.)
- ④ 의견제출통지서(2005. 10. 13.)
- ⑤ 의견서 및 명세서 등 보정서(2006. 2. 13.)
- ⑥ 거절결정서(2006. 2. 23.)
- ⑦ 거절결정불복 심판청구(2006. 3. 23.)
- ⑧ 명세서 등 보정서 제출(2006. 4. 21.)
- ⑨ 보정각하결정서(2006. 5. 25.)
- ⑩ 심사전치출원의 심사결과통지서(2006. 5. 25.)

나. 이 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2006. 2. 13. 명세서 등 보정서 반영)

청구항 1. 열가소성 피막재로 둘러싸인 일정용량의 실리콘 젤; 사용자의 겨드랑이쪽을 향한 외부면과 그 반대편을 향한 내부면; 상기 사용자의 가슴쪽을 향한 오목한 내부 표면과 그 반대편을 향하며 사용자의 가슴에 닿지 않는 면인 외부표면; 상기 내부표면 위에 구비되어 상기 가슴형태를 상기 사용자의 가슴에 밀착되게 하는 압력감지 점착층; 및 상기 각각의 가슴형태의 내측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한쌍의 가슴형태를 붙여 있게 하기 위한 연결고리(connector)를 구비하며, 브라 하부의 두께가 상부의 두께보다 더 두껍게 형성된 등 없고(backless) 어깨끈 없는(strapless) 한 쌍의 가슴형태(breast form)를 포함하는 개량된 가슴형태 시스템의 이용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가슴

형태를 분리시켜 각 가슴형태를 사용자의 가슴에 각각 위치시키는 단계; 상기 각 가슴 형태의 내부표면에 배치된 압력감지 점착층을 사용자 가슴의 원하는 위치에 밀착시키는 단계 및; 상기 각 가슴형태의 내부측면 사이에 위치하여 내부측면에 각각 부착되도록 조절된 연결고리를 속박시키므로써 상기 각 가슴형태를 서로 인접시켜 사용자의 가슴사이의 골짜기를 강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가슴형태는 상기 압력감지 점착층에 의해서 상기 사용자의 가슴에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량된 가슴형태 시스템의 이용방법.(이하 '이 건 제1항 출원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항도 같은 방법으로 칭한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고리가 상기 가슴형태를 인접시킬때 사용자의 가슴을 상방향으로 서로 끌어 당김으로서 사용자의 가슴을 들어 올리는(pushing-up)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량된 가슴형태 시스템의 이용방법.

다. 심판청구후 2006. 4. 21. 보정된 특허청구범위(이하 '이 건 보정발명'이라 한다)

청구항 1. 열가소성 피막재로 둘러싸인 일정용량의 실리콘 젤; 사용자의 겨드랑이쪽을 향한 외부면과 그 반대편을 향한 내부면; 상기 사용자의 가슴쪽을 향한 오목한 내부표면과 그 반대편을 향하며 사용자의 가슴에 닿지 않는 면인 외부표면; 상기 내부표면 전체 또는 내부표면 테두리에 실질적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비되어 상기 가슴형태를 상기 사용자의 가슴에 밀착되게 하는 압력감지 점착층; 및 상기 각각의 가슴형태의 내측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한쌍의 가슴형태를 붙여 있게 하기 위한 연결고리(connector)를 구비하며, 브라 하부의 두께보다 상부의 두께가 더 두껍게 형성된 등 없고(backless) 어깨끈 없는(strapless) 한 쌍의 가슴형태(breast form)를 포함하는 개량된 가슴형태 시스템의 이용 방법에 있어서, 상기 한 쌍의 가슴형태를 분리시켜 각 가슴형태를 사용자의 가슴에 각각 위치시키는 단계; 상기 각 가슴형태의 내부표면에 배치된 압력감지 점

착층을 사용자 가슴의 원하는 위치에 밀착시키는 단계 및; 상기 각 가슴형태의 내부측면 사이에 위치하여 내부측면에 각각 부착되도록 조절된 연결고리를 숙박시키므로써 상기 각 가슴형태를 서로 인접시켜 사용자의 가슴사이의 골짜기를 강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가슴형태는 상기 압력감지 점착층에 의해서 상기 사용자의 가슴에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량된 가슴형태 시스템의 이용방법.(이하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항도 동일한 방법으로 칭한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연결고리가 상기 가슴형태를 인접시킬때 사용자의 가슴을 상방향으로 서로 끌어 당김으로서 사용자의 가슴을 들어 올리는(pushing-up) 단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개량된 가슴형태 시스템의 이용방법.

라. 인용발명들의 요지

(1) 인용발명 1

인용발명 1은 2001. 10. 4. 공개된 미국 공개특허공보 제2001-27079호로서, 등이 없고 끈이 없는 브라이며, 개방된 상단부, 폐쇄된 하단부, 그 상부가 각각 실질적으로 평행한 외측부와 내측부 및 컵 외측부에 인접하여 위치하는 탭을 각각 구비하는 제1컵 및 제2컵을 포함하며, 여기서 제1컵 내측부의 상부는 제2컵 내측부의 상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성이다.

(2) 인용발명 2

인용발명 2는 2001. 7. 10. 공고된 미국 특허공보 제6,257,951호로서, 청구항1은 양 가슴을 지지하기 위한 여러 부재를 포함하는 유연한 끈없는 브라로서, 상기 부재는, 두 개의 컵에 형성되며, 브라의 사용중 가슴에 인접하는 내면을 갖는 적어도 하나의 유연한 폼층과, 각 컵 내부의 적어도 하나의 형성기구를 포함하며, 상기 형성 기구는 각 부재의 컵 내부에 구비되는 유연한 금속 조각을 복수개 포함하고, 또한 상기 적어도 하

나의 유연한 폼층은 두 개의 폼층과 유연한 금속조각이 그 사이에 구비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사용 가능한 등없고 끈없는 브라. 청구항2는 가슴을 지지하는 방법으로서, 유연한 폼 재질의 끈없는 브라를 형성하는 단계, 상기 폼 재질에 적어도 하나의 형성기구를 끼워넣는 단계, 형성 기구에 가압함으로써 소망하는 지지 형상을 얻기 위하여 브라의 형상을 수동적으로 조절하는 단계, 브라의 내면에 접착가능한 조각을 적용하는 단계, 가슴이 컵의 내부에 맞도록 브라를 골격구조에 부착함으로써 끈없는 브라에 의해 지지되도록 하는 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사용 가능한 등없고 끈없는 브라. 청구항3은 제2항에 있어서, 상기 브라는 연속적인 사용을 위해 부가적인 접착 조각을 더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재사용 가능한 등없고 끈없는 브라에 관한 것이다.

(3) 인용발명 3

인용발명 3은 2000. 7. 15.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189040호로서, 여성의 젖가슴이 위치하는 브라지어(10)의 내면 양측에 브라지어의 외측면(11)과 유방이 맞닿는 내측면(12) 사이의 수용부(13)에 여성의 젖가슴 표면의 형상과 동일한 형상을 가진 일정한 두께로 성형된 실리콘팩(20)을 내장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실리콘팩이 내장된 여성용 브라지어에 관한 것이다.

2. 원결정, 보정각하결정 및 원결정 유지의 이유 요지

가. 원결정의 요지

2006. 2. 13.자 보정서에서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브라 하부의 두께가 상부의 두께보다 더 두껍게 형성된”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보정을 하였으나, 이는 이 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공지된 가슴형태에 해당하는 것인 바, 이러한

보정에 의하여도 기 통지된 거절이유(2005. 10. 13.)를 해소할 수 없다.

나. 보정각하결정의 요지

이 건 출원발명의 2006년 4월 21일자 보정서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기재된 브라의 내부표면에 점착층이 구비되는 구성 중 내부표면의 테두리에 점착층이 구비되는 구성은 최초로 출원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되어 특허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보정을 각하한다.

다. 원결정 유지의 이유 요지

출원인은 2006년 3월 23일자로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하고, 2006년 4월 21일자로 명세서 등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특허청구범위 제1항에 브라의 내부표면에 구비된 점착층을 내부표면 전체 또는 테두리에 실질적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비되는 구성을 추가하였으나 이 중 내부표면의 테두리에 점착층이 구비되는 구성은 최초로 출원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항을 추가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보정이 각하되었으며, 이에 따라 특허거절결정의 대상이 되었던 명세서로 재심사한 바, 인용발명 1과 2의 구성을 선택·조합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2006년 2월 23일자 의견제출통지서에 기재된 거절이유를 번복할 만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원결정을 유지한다.

3.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심판청구후 2006. 4. 21. 제출한 명세서 등 보정서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보정은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에 해당되어 특허법 제47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이 건 출원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에 기재된 발명은 인용발명 1 내

지 인용발명 3 또는 인용발명 1 내지 인용발명 3의 결합으로부터 당업자로서는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진보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판단

가. 이 건 보정각하결정이 적법한지 여부

심사관은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에 기재된 브라의 내부표면에 점착층이 구비되는 구성 중 내부표면의 테두리에 점착층이 구비되는 구성은 최초로 출원된 명세서 또는 도면(이하 '이 건 최초명세서'라 한다)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되어 특허법 제47조 제2항의 보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 건 보정발명을 각하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최초명세서의 식별번호 <43>의 "...상기 내부표면(30)은 상기 가슴형태를 사용자의 피부에 밀착시키는 압력 감지 점착층(33)을 포함한다"라는 기재로 보아 브라의 내부표면에 점착층을 형성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어서, 이를 내부표면의 전체에 점착층을 형성한다고 한정하여 해석될 수 없으며, 또한, 식별번호 <44>에는 "상기의 압력 감지 점착층(33)은 여러가지 타입이나 형태의 양면 테입과 같은 사용자의 피부에 가슴형태를 제거 가능하게 붙이는데 적절한 어떤 타입의 압력 감지 점착제(PSA)와 영구적으로 이루어진 압력 감지 점착제(PSAs)도 포함할 수 있다. ... 상기 압력감지 점착층(33)을 포함하는 압력 감지 점착제(PSA)의 양과 타입은 상기 압력 감지 점착층이 구비된 내부 표면의 일부분들이 변할 수 있는 것처럼 변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기 가슴형태의 크기, 모양, 및 무게와 같이 상기 압력 감지 점착층의 양이나 타입, 배열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보아, 브라의 내부표면의 점착층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배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최초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에 기재된 “상기 내부표면 전체 또는 내부표면 테두리”라는 기재는 이 건 최초명세서에 신규사항이 추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기재는 이 건 제1항 출원발명의 “내부표면”을 한정 또는 축소하여 기재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적법하게 보정된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보정사항이 반영된 이 건 보정발명이 특허법 제47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보정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다음 3.나.에서 살핀다.

나.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이 인용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을 갖는지 여부

(1) 이 건 제1항 보정발명과 인용발명들의 대비

(가)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의 기술적 구성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은 열가소성 피막재로 둘러싸인 일정용량의 실리콘 젤(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사용자의 겨드랑이쪽을 향한 외부면과 그 반대편을 향한 내부면(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사용자의 가슴쪽을 향한 오목한 내부표면과 그 반대편을 향하며 사용자의 가슴에 닿지 않는 면인 외부표면(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내부표면 전체 또는 내부표면 테두리에 실질적으로 반영구적으로 구비되어 상기 가슴형태를 상기 사용자의 가슴에 밀착되게 하는 압력감지 접촉층(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및 상기 각각의 가슴형태의 내측 사이에 위치하여 상기 한쌍의 가슴형태를 붙여 있게 하기 위한 연결고리(connector)를 구비(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하며, 브라 하부의 두께보다 상부의 두께가 더 두껍게 형성(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된 등 없고 (backless) 어깨끈 없는(strapless) 한 쌍의 가슴형태(breast form)를 포함하는 개량된

가슴형태 시스템의 이용 방법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7'이라 한다), 상기 한 쌍의 가슴형태를 분리시켜 각 가슴형태를 사용자의 가슴에 각각 위치시키는 단계; 상기 각 가슴형태의 내부표면에 배치된 압력감지 점착층을 사용자 가슴의 원하는 위치에 밀착시키는 단계 및; 상기 각 가슴형태의 내부측면 사이에 위치하여 내부측면에 각각 부착되도록 조절된 연결고리를 속박시키므로써 상기 각 가슴형태를 서로 인접시켜 사용자의 가슴사이의 골짜기를 강화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상기 가슴형태는 상기 압력감지 점착층에 의해서 상기 사용자의 가슴에 고정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8'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개량된 가슴형태 시스템의 이용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하 각 구성요소별로 인용발명들과 대비하기로 한다.

(나) 목적 대비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은 강화 연결고리에 의해 인접된 한 쌍의 가슴형태를 포함하는 부착 가능한 가슴형태 강화시스템의 이용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인용발명 1은 가슴을 들어주고 지지해줌으로써 편리하게 착용할 수 있는 끈이 없고 등이 없는 브라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인용발명 2는 착용이 쉽고, 가슴형상 및 가슴크기의 향상이 가능하고, 손으로도 브라의 형상을 조절할 수 있는 등 없고 끈 없는 브라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인용발명 3은 실리콘팩이 내장된 브래지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건 제1항 보정발명과 인용발명들은 그 목적이 상이하다 하겠다.

(다) 구성 대비

1) 이 건 제1항 보정발명과 인용발명 1의 대비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요소 1인 열가소성 피막재로 둘러싸인 일정용량의 실리콘 젤의 구성은 인용발명 1에서는 이와 대응될 만한 구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요소 2는 인용발명 1의 도면에 도시된 브라의 모양을 보면 사용자의 가슴쪽을 향한 면과 그 반대편을 향한 면이 도시되어 있으므로 그 기술 구성에 차이가 없다.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요소 3은 인용발명 1의 도면에 도시된 브라의 모양을 보면 사용자의 가슴쪽을 향한 내부표면과 그 반대편을 향하며 사용자의 가슴에 닿지 않는 외부표면이 도시되어 있으므로 그 기술구성에 차이가 없다.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요소 4는 인용발명 1의 양 컵의 외측부(24)와 연결된 탭(30)에 점착수단을 형성한 구성과 대응된다 할 수 있으나, 구성요소 4는 내부표면 전체 또는 내부표면 테두리에 압력감지 점착층을 형성하였음에 비하여 인용발명 1은 컵의 외측부와 연결된 탭에 점착수단을 형성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요소 5는 인용발명 1의 양 컵의 내측 상부에 위치하는 중간연결구(16)의 구성에 대응되는 것으로 그 기술구성이 동일하다.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요소 6 내지 구성요소 8은 인용발명 1에서는 이와 대응될 만한 구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2) 이 건 제1항 보정발명과 인용발명 2의 대비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요소 1인 열가소성 피막재로 둘러싸인 일정용량의 실리콘 젤의 구성은 인용발명 2에서는 이와 대응될 만한 구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요소 2는 인용발명 2의 도면에 도시된 브라의 모양을 보면 사용자의 가슴쪽을 향한 면과 그 반대편을 향한 면이 도시되어 있으므로 그 기술 구성에 차이가 없다.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요소 3은 인용발명 2의 도면에 도시된 브라의 모양을

보면 사용자의 가슴쪽을 향한 내부표면과 그 반대편을 향하며 사용자의 가슴에 닿지 않는 외부표면이 도시되어 있으므로 그 기술구성에 차이가 없다.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요소 4는 인용발명 2의 내면에 접착가능한 조각을 적용한다는 구성과 대응된다 할 수 있으나, 인용발명 2는 내면에 접착가능한 조각(접착테이프)을 적용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구성요소 4의 내부표면 전체 또는 내부표면 테두리에 압력감지 점착층을 형성한 구성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요소 5 내지 구성요소 8은 인용발명 2에서는 이와 대응될 만한 구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3) 이 건 제1항 보정발명과 인용발명 3의 대비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요소 1은 인용발명 3의 얇은 피막용기 내에 실리콘이 충전 밀폐되어 있는 실리콘팩(20)과 대응된다 할 수 있으나, 구성요소 1은 자체가 브래지어컵이 되는데 비하여 인용발명 3은 브래지어 컵 자체가 아닌 실리콘팩(20)을 브래지어의 수용부(13)에 삽입하여 보형물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요소 2는 인용발명 3에서는 이와 대응될 만한 구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요소 3은 인용발명 3의 사용자의 가슴쪽을 향하는 내측천(12)과 그 반대를 향하며 사용자의 가슴에 닿지 않는 면인 외측천(11)의 구성과 대응되는 것으로 그 기술구성에 차이가 없다.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의 구성요소 4 내지 구성요소 8은 인용발명 3에서는 이와 대응될 만한 구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차이가 있다.

(라) 효과 대비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은 사용자로 하여금 한 쌍의 가슴형태를 사용자의 가슴, 피

부에 간단하게 접촉시키고, 그런 다음에 상기 가슴형태를 연결고리로 인접시킴으로써 전통적인 브라의 사용을 제거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가슴 크기와 모양의 강화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슴 사이의 골짜기와 들어 올려지는(push-up)가슴의 강화를 원하는 만큼 맞출 수 있게 한다는 효과가 있음에 비하여 인용발명들에서는 이 건 제1항 보정발명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양 발명의 효과 역시 상이하다.

(마) 대비결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은 인용발명들과 그 목적이 상이하고, 그 기술구성이 상이하여 구성의 곤란성이 인정되며, 그에 따른 효과 역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어느 하나의 인용발명에 이와 다른 인용발명들을 결합한다 하여도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은 인용발명들에 비해 진보성이 있다 하겠다.

(2) 이 건 제2항 보정발명은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모두 포함하면서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으로서 이 건 제1항 보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

다.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보정발명은 이 건 최초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항이 추가되었다고는 할 수 없고, 이 건 제1항 출원발명을 한정 또는 축소하여 기재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적법하게 보정된 것이라 하겠으며, 또한 이 건 보정발명은 인용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보정발명을 각하하고, 이 건 출원발명이 인용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한 원결정은 심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러므로 보정각하결정 및 원결정을 취소하고 이 건을 다시 심사에 부치기 위해 특허청 심사본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2007. 5. 28.

심판장

심판관

정순성



주 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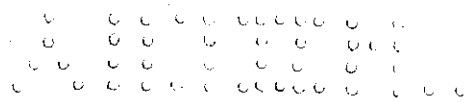
심판관

이민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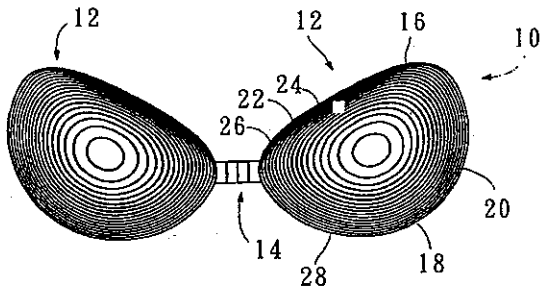
심판관

황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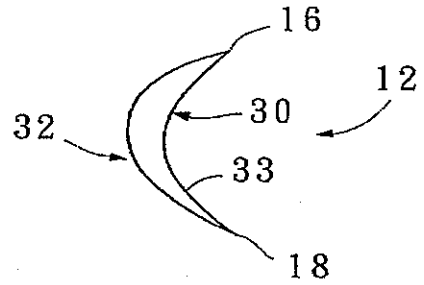


별지1 : 이 건 특허발명의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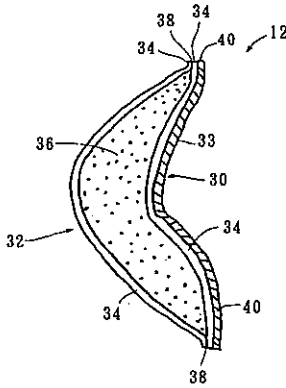
【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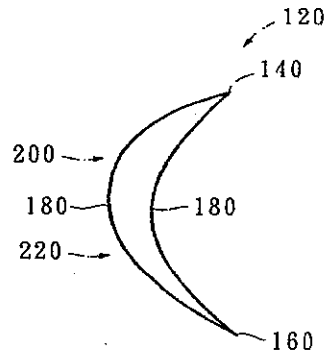
【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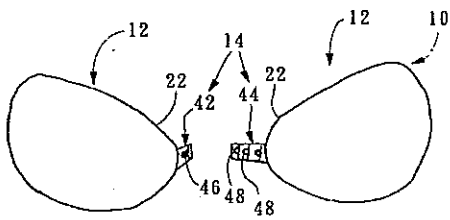
【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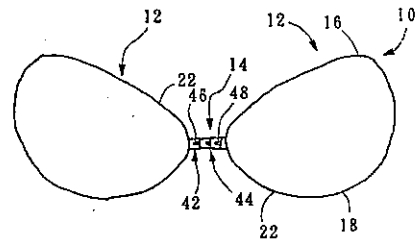
【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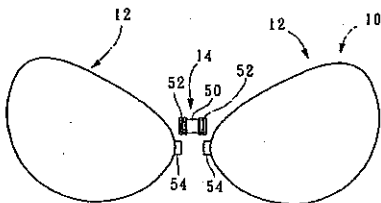
【도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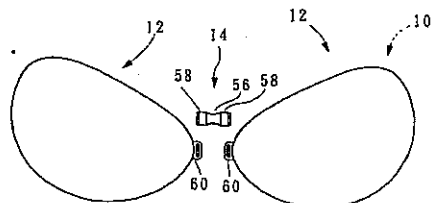
【도5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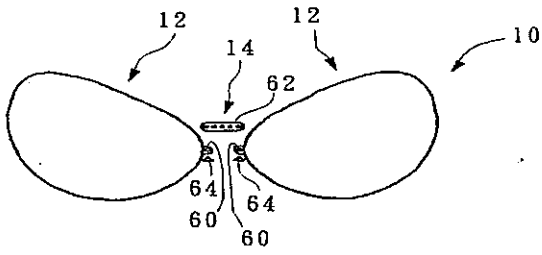
【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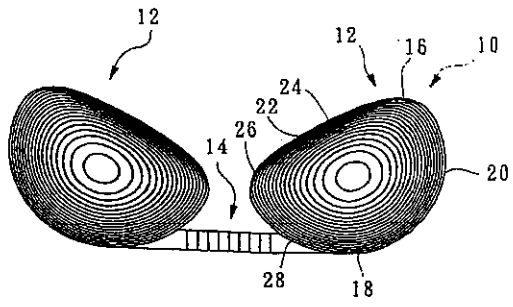
【도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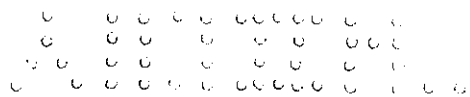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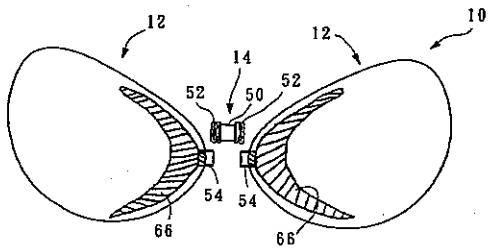
【図8】



【図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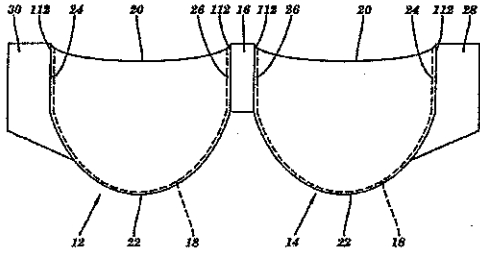
【図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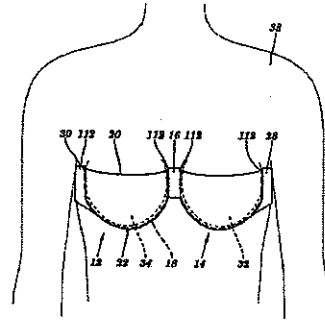
별지2 : 인용발명들의 도면

1. 인용발명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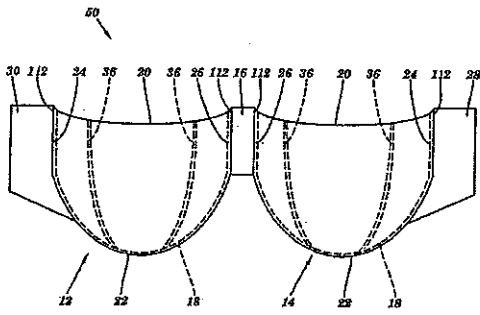
【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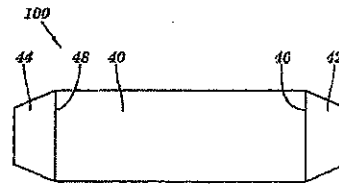
【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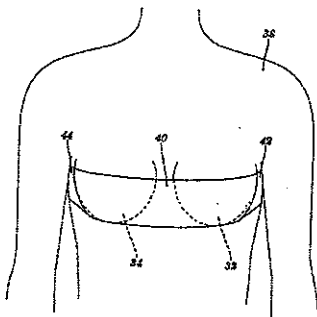
【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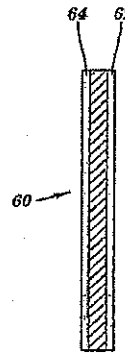
【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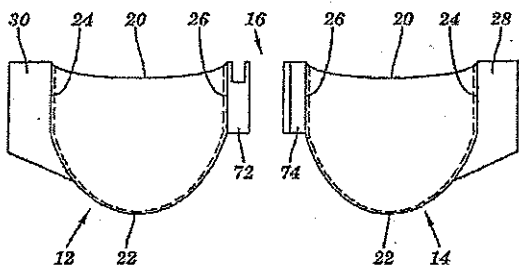
【도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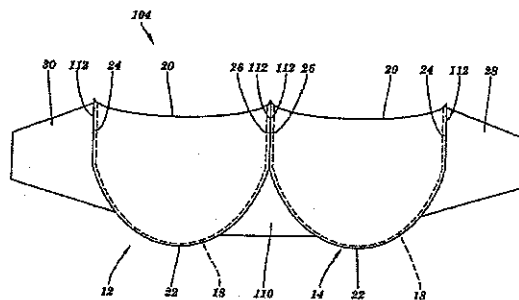
【도6】



【도7】



【도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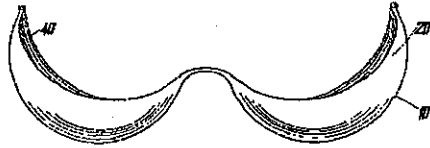


2. 인용발명2

【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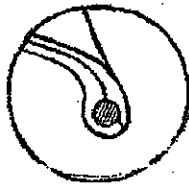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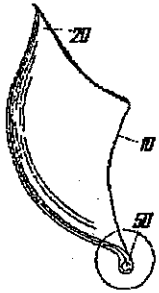
【도2】



【도3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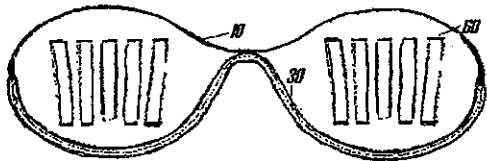
【도3b】

【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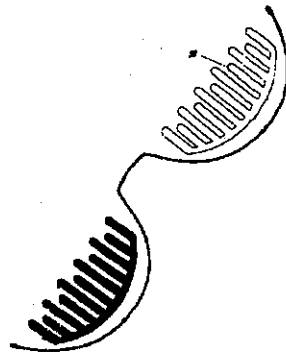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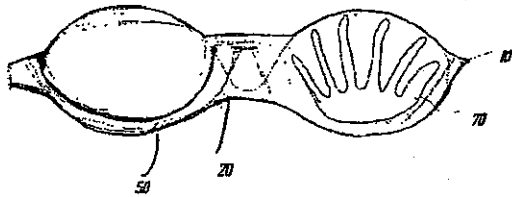
【도5】

【도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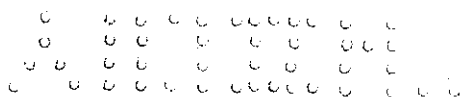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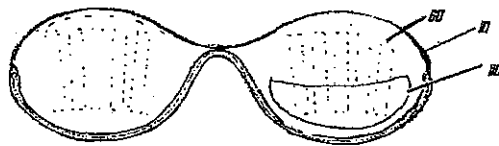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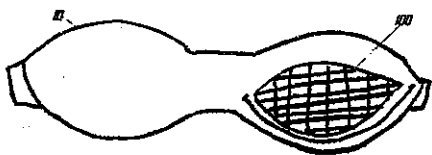
【도7】

【도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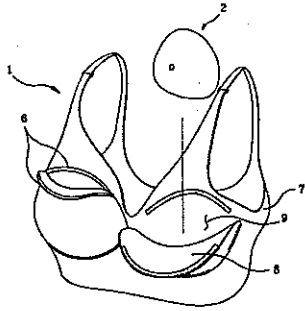
【도9】

【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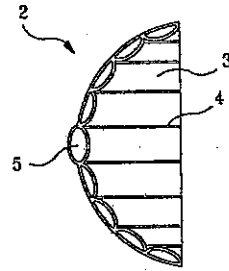


3. 인용발명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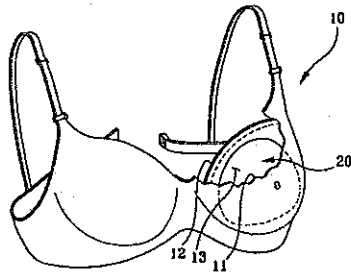
【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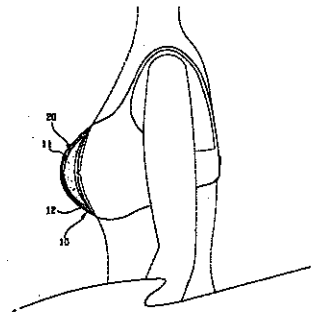
【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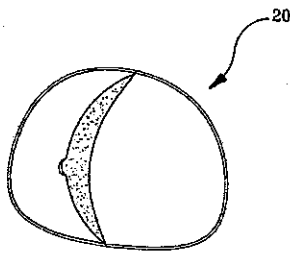
【도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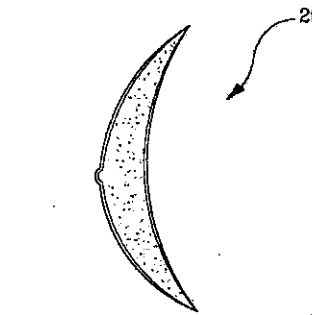
【도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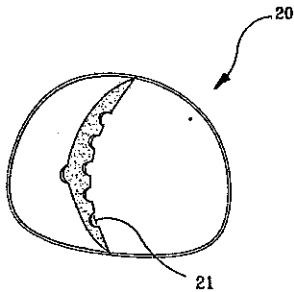
【도5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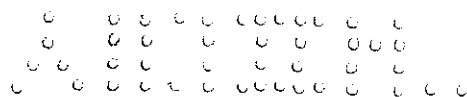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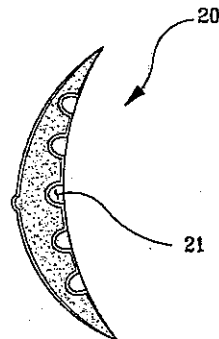
【도5b】



【도6a】



【도6b】



등본입니다.

특허심판원 심판행정팀 